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22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위원장 변경(안 제2조제2항)

1) 기획예산담당관 ⇒ 직제 순서가 앞서는 국장

나. 위원장과 부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자 변경(안 제2조제2항)

1) 의안제출 주무실과장 ⇒ 참석한 위원 중 직제 순서가 앞서는 위원
다. 당연직 위원 범위 확대(안 제2조제3항)

1) 실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수도사업소장
⇒ 본청 국장·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담당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생략함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각1인”을 “각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수도사업소장”을 “본청 국장·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을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직제 순서가 앞서는 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 직제 순서가 앞서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결정”을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본 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보안업무시행요강 제4조에 의한”을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부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u>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거창군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구성) ① <u>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u></p> <p>② <u>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안제출 주무실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③ <u>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수도사업소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u></p> <p>④ <u>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필요에 따라 위원은 10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u></p> <p>⑤ <u>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u></p>	<p>제2조(구성) ① <u>거창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u></p> <p>② <u>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직제 순서가 앞서는 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 직제 순서가 앞서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③ <u>당연직 위원은 각 본청 국장·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u></p> <p>④ <u>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필요에 따라 위원은 1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u></p> <p>⑤ <u>위촉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u></p>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5. 주요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다만,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것은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외국산 기자재의 구매,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
7. 다른 조례, 규칙, 규정에서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
8. 보안업무시행요강 제4조에 의한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9. 건당 5백만원 이상 체납자의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10.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1.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5. 주요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다만,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것은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외국산 기자재의 구매,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
7. 다른 조례, 규칙, 규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
8.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9. 건당 5백만원 이상 체납자의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10.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